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부록 제1289호 2022. 1. 6.(목)

##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21호(2022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 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22호(2022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 15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3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7

|   |  |  |  |  |  |  |  |
|---|--|--|--|--|--|--|--|
| 회 |  |  |  |  |  |  |  |
| 람 |  |  |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1월 03일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관련 조례에 대한 주민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함.
- 정보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하여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제척기준 등을 명확화하여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의 ‘정보’ 범위를 확대 적용(안 제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용어정리: ‘정의는’ ⇒ ‘뜻은’)
- 정보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함.

### 나. 관련 상위법 명시 구체화(안 제3조의2)

### 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및 제척기준 등 명확화(안 제5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및 제척기준 등을 명확화 하여 심의회의 공정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① 외부위원 확대(안 제5조제2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 ② 내부위원 구체화 명시(안 제5조제3항)

내부위원을 소속국장, 건설과장으로 구체화 명시

#### ③ 위원의 제척사유 보완(안 제5조제5항)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사유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라.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용 문구 일부 수정(안 제7조 제1항)

### 마.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절차 조문내용 ‘항’ 으로 구분 정비(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 제12조의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01. 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민원여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555   FAX 749-754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 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 5. 참고자료

- 개정 조례(안) : 붙임 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및 산하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집행기관”이란 구 및 소속 행정기관,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2(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두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소속국장이 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집행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4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국장과 건설과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심의사항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

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심의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 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청 및 처리)** ①**심의사항**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정보의 공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 청구인이 공표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구청장, 부구청장, 5급이상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제5조에 의거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심의회의 결정사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5. 해당연도 업무계획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통계조사결과
7. 자체평가결과
8.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9.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10.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11.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12.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 보고서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의 시설 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6. 총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된 금액이 공사금액의 20%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된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8.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구세)
9.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그 결과(위원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개최 건명, 최종결과
10. 공청회 결과보고서
11.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정보공개담당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청구인·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공표방법)** ①정기적, 비정기적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상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②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구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1”로 정한다.

**제15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5.1.3]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정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어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br>2. ~ 5. (생략) | 제2조(정의) -----<br>----- 뜻은 -----.<br>1. -----란 인천광역시 연수구-----<br>-----<br>-----<br>--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br>-----. |
| 제5조(구성) ① (생략)<br>②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br>③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br>② ----- 위원-----<br>-----, -----<br>3분의 2는 -----<br>-----<br>-----<br>-----<br>-----.                                           |
|                                                                                                                                                                                                    | ③ -----<br>-----, -----                                                                                                                              |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전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전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국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  
-----  
----. 다만, -----  
-----.

⑤ (현행과 같음)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심의사항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                                                                                                                                                                                                                                                                                                                                                                                                                    |
|-------------------------------------------------------------------------------------------------------------------------------------------------------------------------------------------------------------------------------------------------------------------------------------------|--------------------------------------------------------------------------------------------------------------------------------------------------------------------------------------------------------------------------------------------------------------------------------------------------------------------------------------------------------------------------------------------------------------------|
| <p>제7조(심의회 운영) ① <u>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u></p> <p>② ~ ④ (생략)</p> <p>제8조(심의요청 및 처리) <u>심의회가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u></p> | <p><u>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p> <p>5. <u>그 밖에 해당 심의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제7조(심의회 운영) ① <u>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u><br/>-----<br/>-----.</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심의요청 및 처리) ① <u>심의회가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u></p> |
|-------------------------------------------------------------------------------------------------------------------------------------------------------------------------------------------------------------------------------------------------------------------------------------------|--------------------------------------------------------------------------------------------------------------------------------------------------------------------------------------------------------------------------------------------------------------------------------------------------------------------------------------------------------------------------------------------------------------------|

## 2022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2. 1. 6.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민투표청구권자]

(단위 : 명)

| 기관명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         |     | 투표청구<br>주민수 | 비고 |
|-----|-------------|---------|-----|-------------|----|
|     | 계           | 내국인     | 외국인 |             |    |
| 연수구 | 314,326     | 313,358 | 968 | 28,576      | -  |

※ 내국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 외국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

## 2022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 1. 6.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구청장]

(단위 : 명)

| 동 별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              |                 | 서명인수   | 최소<br>서명인수 | 비 고                  |
|---------|---------------|--------------|-----------------|--------|------------|----------------------|
|         | 계             | 19세 이상<br>주민 | 19세 이상<br>등록외국인 |        |            |                      |
| 계       | 314,051       | 313,358      | 693             | 47,108 |            |                      |
| 옥 련 1 동 | 16,450        | 16,413       | 37              |        | 2,468      | 100분의 15이상           |
| 옥 련 2 동 | 17,120        | 17,083       | 37              |        | 2,568      | 100분의 15이상           |
| 선 학 동   | 15,474        | 15,383       | 91              |        | 2,322      | 100분의 15이상           |
| 연 수 1 동 | 17,270        | 17,186       | 84              |        | 2,591      | 100분의 15이상           |
| 연 수 2 동 | 18,477        | 18,416       | 61              |        | 2,772      | 100분의 15이상           |
| 연 수 3 동 | 14,231        | 14,196       | 35              |        | 2,135      | 100분의 15이상           |
| 청 학 동   | 22,211        | 22,154       | 57              |        | 3,141      | 1만분의 100을<br>넘을 수 없음 |
| 동 춘 1 동 | 20,834        | 20,800       | 34              |        | 3,126      | 100분의 15이상           |
| 동 춘 2 동 | 15,350        | 15,338       | 12              |        | 2,303      | 100분의 15이상           |
| 동 춘 3 동 | 14,668        | 14,656       | 12              |        | 2,201      | 100분의 15이상           |
| 송 도 1 동 | 29,936        | 29,897       | 39              |        | 3,141      | 1만분의 100을<br>넘을 수 없음 |
| 송 도 2 동 | 26,128        | 26,082       | 46              |        | 3,141      | 1만분의 100을<br>넘을 수 없음 |
| 송 도 3 동 | 36,826        | 36,762       | 64              |        | 3,141      | 1만분의 100을<br>넘을 수 없음 |
| 송 도 4 동 | 18,893        | 18,868       | 25              |        | 2,834      | 100분의 15이상           |
| 송 도 5 동 | 30,183        | 30,124       | 59              |        | 3,141      | 1만분의 100을<br>넘을 수 없음 |

※ 산정된 서명인수 47,108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5개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외국인 :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 [구의원]

(단위 : 명)

| 선거구별 | 동별   | 청구권자 총수 |              |                 | 서명인수   | 최소<br>서명인 수 |
|------|------|---------|--------------|-----------------|--------|-------------|
|      |      | 계       | 19세 이상<br>주민 | 19세 이상<br>등록외국인 |        |             |
| 가선거구 | 계    | 141,966 | 141,733      | 233             | 28,393 |             |
|      | 송도1동 | 29,936  | 29,897       | 39              |        | 1,420       |
|      | 송도2동 | 26,128  | 26,082       | 46              |        | 1,420       |
|      | 송도3동 | 36,826  | 36,762       | 64              |        | 1,420       |
|      | 송도4동 | 18,893  | 18,868       | 25              |        | 1,420       |
|      | 송도5동 | 30,183  | 30,124       | 59              |        | 1,420       |
| 나선거구 | 계    | 52,634  | 52,551       | 83              | 10,527 |             |
|      | 옥련1동 | 16,450  | 16,413       | 37              |        | 526         |
|      | 동춘1동 | 20,834  | 20,800       | 34              |        | 526         |
|      | 동춘2동 | 15,350  | 15,338       | 12              |        | 526         |
| 다선거구 | 계    | 56,601  | 56,423       | 178             | 11,320 |             |
|      | 옥련2동 | 17,120  | 17,083       | 37              |        | 566         |
|      | 연수1동 | 17,270  | 17,186       | 84              |        | 566         |
|      | 청학동  | 22,211  | 22,154       | 57              |        | 566         |
| 라선거구 | 계    | 62,850  | 62,651       | 199             | 12,570 |             |
|      | 선학동  | 15,474  | 15,383       | 91              |        | 629         |
|      | 연수2동 | 18,477  | 18,416       | 61              |        | 629         |
|      | 연수3동 | 14,231  | 14,196       | 35              |        | 629         |
|      | 동춘3동 | 14,668  | 14,656       | 12              |        | 629         |

※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당해 선거구 안의 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입  
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 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1. 제정이유

-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기 위해 건립기준 수립 및 관리체계 등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목적, 공공조형물 정의, 건립신청 및 기준 등을 정함 (안 제1조 ~ 제6조)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을 정함 (안 제7조 ~ 제10조)
-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등을 정함 (안 제11조 ~ 제12조)
-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 ~ 제14조)

### 3. 의견제출

-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우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전 화 : 032-749-8632 / FAX : 032-749-8639

이메일 : [baseman3000@korea.kr](mailto:baseman3000@korea.kr)

- 제출서식

| 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안)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붙임 1. 조례제정 (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 [붙임 1] 조례제정 [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며,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 다. 동상·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

형물 건립, 이전, 교체, 유지 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적용한다. 다만, 전시나 행사 등을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건립 신청)** 건립주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 역사성 및 정체성과의 부합
3.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인근 지역의 조망권 확보 여부
4.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건립부지면적의 적정성
5.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6.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7. 관련 법령 등 적합 여부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부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건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4.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 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 및 자문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당연직 위원

가. 총괄부서의 국장

나. 총괄부서장 및 주관부서장

다. 필요한 경우 도로·공원 등 관련 부서장

## 2. 위촉직 위원

가.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대표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다.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공조형물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건립주체가 수행한다. 다만 건립주체와 주관부서가 동일할 경우, 주관부서의 업무 담당이 제안 설명을 수행한다.

⑤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건립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 한한다)
3. 대상지의 적정성
4. 파급효과
5. 관련 법령 적합여부
6. 그 밖에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구청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건립주체에게 건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완료한 후 주관부서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준공 처리 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립주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건립주체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주관부서는 구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상태점검 결과에 따라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에 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

가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건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공 공 조 형 물 건 립 신 청 서                                                                                                                                                                                                                                                                                     |         |  |       |  |
|---------------------------------------------------------------------------------------------------------------------------------------------------------------------------------------------------------------------------------------------------------------------------------------------------------|---------|--|-------|--|
|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                                                                                                                                                                                                                                                                                                         | 전 화 번 호 |  | 이메일주소 |  |
| 조 형 물<br>개 요                                                                                                                                                                                                                                                                                            | 사 업 명   |  | 종 류   |  |
|                                                                                                                                                                                                                                                                                                         | 설 치 위 치 |  | 규 모   |  |
|                                                                                                                                                                                                                                                                                                         | 설 치 기 간 |  | 제 작 자 |  |
| <p>「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span style="font-size: 1.5em;">년      월      일</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span style="font-size: 1.2em;">신청인                      ①인</span> </p> |         |  |       |  |
| <p>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p> <p style="padding-left: 40px;">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 등) (별지 제4호서식)</p> <p style="padding-left: 40px;">3. 그 밖의 증빙서류</p>                                                                                                                                                    |         |  |       |  |

## [별지 제2호서식]

### 공 공 조 형 물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나. 모형 또는 형태:

다. 재 질:

4. 건립 취지 및 작품 설명

가. 건립 취지

나. 작품 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

| <b>공 공 조 형 물 심 의 · 자 문 신 청 서</b>                                                                                                                                                                                                                             |                                                   |                           |  |
|--------------------------------------------------------------------------------------------------------------------------------------------------------------------------------------------------------------------------------------------------------------|---------------------------------------------------|---------------------------|--|
|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구 분                                                                                                                                                                                                                                                          | <input type="checkbox"/> 심 의                      | 건립, 이전, 교체, 해체, 보수, 재심의 등 |  |
|                                                                                                                                                                                                                                                              | <input type="checkbox"/> 자 문                      | 공공조형물에 대한 자문              |  |
| 신청내용                                                                                                                                                                                                                                                         | - 기 간 :<br>- 사 업 비 :<br>- 주요(사업)내용<br>•<br>•<br>• |                           |  |
| <p>「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                                  인</p> |                                                   |                           |  |
| <b>구비서류</b> 1. 사업의 필요성<br>2. 건립대상자 현황 분석(동상 등)<br>3. 대상지의 적정성<br>4. 파급효과<br>5. 관련 법령 적합여부<br>6. 그 밖의 증빙서류                                                                                                                                                    |                                                   |                           |  |

[별지 제4호서식]

|                                                            |                                      |  |         |  |
|------------------------------------------------------------|--------------------------------------|--|---------|--|
|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동상 등)                                      |                                      |  |         |  |
| 대<br>상<br>자<br><br>인<br>적<br>사<br>항<br><br>및<br><br>업<br>적 | 인      적      사      항               |  |         |  |
|                                                            | 성            명                       |  | 출생 - 사망 |  |
|                                                            | 출 생 지 역<br>(묘소)                      |  | 활 동 지 역 |  |
|                                                            | 업                                  적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인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  |      |  |
|----------------|--|------|--|
| 명칭             |  | 건설일자 |  |
| 위치<br>(공공시설명)  |  | 형상   |  |
| 구조             |  |      |  |
| 규격             |  |      |  |
| 건설주체           |  | 관리기관 |  |
| 건설취지           |  |      |  |
| 인물 또는<br>사실 소개 |  |      |  |

(뒤쪽)

동상 · 기념비 · 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 · 기념비 · 조형물의 전면사진 (5" × 7")

## [붙임 2] 규제영향분석서

### 1. 분석대상 규제개요

|                              |                                                                                                                                                                            |       |      |           |   |           |  |           |  |                |  |
|------------------------------|----------------------------------------------------------------------------------------------------------------------------------------------------------------------------|-------|------|-----------|---|-----------|--|-----------|--|----------------|--|
| 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2. 구분 |      |           |   |           |  |           |  |                |  |
|                              | 등록단위                                                                                                                                                                       | 주규제   | 부수규제 | 신설        | 0 | 강화        |  | 내용<br>심사  |  | 존속<br>기한<br>연장 |  |
|                              |                                                                                                                                                                            |       |      |           |   |           |  |           |  |                |  |
|                              | ○ 조례제정에 따른 규제 강화                                                                                                                                                           |       |      | 경제적<br>규제 |   | 사회적<br>규제 |  | 행정적<br>규제 |  | ○              |  |
| 3. 소관부서 및<br>작성자 인적사항        | ○ 도시계획과장 김승준<br>○ 도시디자인팀장 신현탁<br>○ 담당자 박진호                                                                                                                                 |       |      |           |   |           |  |           |  |                |  |
| 4. 피규제집단 및<br>이해관계자          | ○ 연수구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자                                                                                                                                                 |       |      |           |   |           |  |           |  |                |  |
| 5. 규제존속기한                    | ○ 조례 폐지 시까지                                                                                                                                                                |       |      |           |   |           |  |           |  |                |  |
| 6. 현행규제 및<br>신설(강화)규제의<br>내용 | ○ 신설규제<br>제4조(건립 신청) 건립주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br>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br>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 하는<br>것을 조건으로 한다. |       |      |           |   |           |  |           |  |                |  |
| 7. 규제체계도                     | ○ 해당없음                                                                                                                                                                     |       |      |           |   |           |  |           |  |                |  |

##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1. 규제의 필요성

####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2014. 9.15) 내용을 준용하여 제정
- ☐ 공공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건립주체인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조형물로 지정 후 구의 관리대상으로 전환하여 조례에 따른 법적지원 및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

####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을 통해 조례에 따른 법적지원 및 이설, 철거 등의 사유 발생 시 구 심의 절차를 통한 체계적 관리 기준 사항을 규정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2-1. 규제대안의 검토

- ☐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이 기부채납 없이 구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하고 임의 이설 또는 철거가 발생 가능함에 따라 상기 조례가 미제정 될 경우 대체할 수단 없음

####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해당없음

####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해당없음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 3-1. 규제의 적정성

- ☐ 규제의 기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2014. 9.15) 내용을 준용하여 규정

#### 3-2. 이해관계자 협의

- ☐ 입법예고를 통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확보